

# 교원인사규정

제정 : 1996.03.01    개정 : 2019.07.10  
개정 : 1998.05.01    개정 : 2020.03.01  
개정 : 1999.10.18    개정 : 2021.02.08  
개정 : 1999.11.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00.03.01    개정 : 2022.02.16  
개정 : 2005.03.01    개정 : 2022.09.01  
개정 : 2008.06.09    개정 : 2023.10.16  
개정 : 2008.09.01    개정 : 2024.03.01  
개정 : 2008.12.17    개정 : 2025.03.01  
개정 : 2011.11.22  
개정 : 2012.07.22  
개정 : 2014.11.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칭한다.)교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제원칙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다. <개정 1998.05.01., 1999.10.18., 2008.12.17., 2011.11.22., 2021.12.01.>

제2조(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계열'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1.01., 2021.12.01.>

③ 전임교원의 종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07.22.>

④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9.07.10., 2021.02.08.>

⑤ <삭제 2021.02.0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25.03.01.>

②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제5조(정년)와 제4장(승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7. 10.>

제4조(임기) 교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기만료 이전에 승진임용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1. 12. 01.>

제5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 12. 01.>

제6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는 전임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법령에 의한 겸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7조(인사기록) ①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 작성 보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임용의 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9. 07. 10.>

제9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장 신규임용

제11조(임용의 원칙)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에 의해 행하되 공개 채용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직급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을 기본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교원의 임용은 가급적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및 산업체현장 근무경력 소

지자를 우선 임용한다.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모집하는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기타 연구, 교육경력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2021. 02. 08., 2021. 12. 01.>

④ 신규임용 교원은 2편(2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교수 임용의 경우 1편(100%)의 연구실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소정양식)로 유예할 수 있으며 서약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2., 2021. 12. 01.>

⑤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의 산출기준은 교원의 자격기준 [별표 1]에 의하며, 경력산정(인정)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21.12.01., 2025.03.01.>

⑥ <삭제 2021. 02. 08.>

⑦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교의 특수한 목적에 의거 특별히 충원하여야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06. 09.> <개정 2020. 3. 1., 2021. 02. 08.>

⑧ 교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 대학교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1. 02. 08.> <개정 2021. 12. 01.>

제13조(신규임용 심사기준)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 12. 01.>

1. 모집분야 합당 여부 <개정 2021. 12. 01.>
2. 국가기술자격 및 산업체 경력자 우대
3. 연구실적·교육경력 및 학교성적, 연령 등
4. 인성 및 품위

제14조(임용기간)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정관 제39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전항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 12. 01.>

제15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학년 시작 전에 완료한다. <개정 2021. 12. 01.>

제16조(임용계약) 직급별 임기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제 등 임기를 제외한 임용 조건의 내용은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1. 12. 0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 12. 01.>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 12. 0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1. 12. 0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교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 12. 01.>

제18조(임용절차)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3.10.16.>

② 교무처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자의 경력 및 연구실적, 기타 임용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12.01., 2023.10.16.>

③ 총장은 본 대학교 건학 이념과 교육이념에 적합한 적임자를 제13조에 명시된 기준과 면접 등 심사에 의해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에게 임명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④ 이사장은 임명 제청된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직급별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01.>

⑤ 교원의 신규임용 내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삭제>
2. 학력 증명서(졸업 및 수료증명서) 각 1부 <개정 2021. 12. 01.>
3. 경력증명서(재직기관마다) 각 1부 <개정 2021. 12. 01.>
4. <삭제>
5. 신원진술서 의뢰양식(경찰청) 3부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7.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확인서 1부
8. <삭제>

9. 교원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부
10. 사진(반명함판) 2매
11. <삭제>
12.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1부
13. 주민등록등본 2부
14. 기타 참고자료

⑥ 신규임용된 자가 임용 후 취임하지 않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및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 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19조의2(기간제교원) ① 교원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 이라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08.>

1. 교원이 제3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개정 2021. 02. 08., 2021. 12. 01.>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21. 12. 01.>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개정 2021. 12. 01.>

②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 12. 01.>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면권자는 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08., 2021. 12. 01.>

②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제19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01.>

제19조의4(산학협력교원 임용) ① 임면권자는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이 없는 자로서 산학협력 자격요건에 의한 산학협력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과에 소속되며, 대학 및 학과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제반 정책개발, 연구개발사업유치,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의, 현장실습, 인턴 산학협력교육, 산업체와의 체계구축을 담당한다.

③ 산학협력교원은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한다. <개정 2021. 12. 01.>

④ 산학협력교원은 대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실적 등을 평가한다. <신설 2012. 07. 22.> <개정 2021. 12. 01.>

## 제4장 승진

제20조(정원의 관리)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교 실정에 맞추어 직급별로 교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한에 달하고 연구실적이 충족된 자 중에서 근무평정 및 심사를 거쳐 매년 4월1일과 10월 1일자로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21. 12. 01.>

1. <삭제 2012. 07. 22.>

2. 조교수 : 6년 <개정 2012. 07. 22., 2021. 02. 08.>

3. 부교수 : 7년 <개정 2021. 02. 08.>

② 전항의 연구실적은 현직급 내에서 연구발표한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의 연구실적심사기준에 의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과 1주일 이상의 전공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02. 08., 2021. 12. 01.>

③ 교무처장은 제20조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심사평정표<서식 제1호>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업적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이사장에게 승진임용 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02.08., 2021.12.01., 2023.10.16.>

1.~ 4. <삭제 2021. 02. 08.>

④ <삭제 2021. 02. 08.>

⑤ 교원의 승진심사 평정기간과 평가자료는 승진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급별로 최근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로 한다. 다만,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조제2항제1호에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년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1. 02. 08.> <개정 2021. 12. 01.>

1. 부교수 승진 : 승진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

2. 교수 승진 : 승진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7년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

⑥ 교원의 승진은 제5항 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에서의 본 대학교의 발전에 대한 공헌

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2. 08.> <개정 2021. 12. 01.>

1. 학교발전과 학사운영에 대한 적극적 공헌
2. 각종 제도 입안·개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공헌 <개정 2021. 12. 01.>
3.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질서존중

제22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01.>

1.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휴직 중인 자 <개정 2021. 12. 01.>
4. 제12조제4항에 의거 연구실적물 제출연기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현 직급 내에서 연구실적물 부족분을 제출하지 않은 자 <개정 2021. 12. 01.>
5. 제21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1. 12. 01.>
6. 기타 학교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

제22조의2(특별승진) ① 교원업적평가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으며,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도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특별 승진할 수 있다. <신설 2021.02.08.> <개정 2021.12.01.>

② 교무처장은 특별승진 대상교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심사평정표 <서식 제1호>에 의거 평정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한다. <신설 2021.02.08.> <개정 2021.12.01., 2023.10.16.>

③ 교무처장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 및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현 직급 근속연수가 15년 이상된 교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을 총장이 추천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제23조(연수이수) ① 교원의 자질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승진임용시 현직급에서 최소한 5일 이상의 전공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01.>

② 제1항의 5일 이상 연수는 기간을 분할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이수를 필한 후 해당산업체장이 발행하는 산업체 현장연수이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2025.03.01.>

③ 산업체 현장연수 대상기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01.>

1. 산학협동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이상의 업체 <개정 2021. 12. 01.>
4. 교육부, 관련 학회 및 협회 주관(후원)의 연수 <개정 2014. 11. 01.>
5. 전국 전문대학교 학과별, 계열별 공동연수(학교 내 자체연수 제외) <개정 2021. 12. 01.>
6. 전공과 관련된 해외연수 또는 시찰
7. 기타 연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8. 어학계열, 인문과학계열 전공 교원들의 관련학과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

제24조(연구학기제 운영) ① 교원의 실무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 기간 연수하게 하여 급격하게 발전하는 산업정보와 첨단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연구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연구학기제의 방법, 인원, 기간 등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임용

제25조(절차) ① 제14조에 의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무처장은 만료일 4개월 전에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02.08., 2021. 12. 01., 2023.10.16.>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의 재임용을 제청한다. 이사장은 재임용하지 않을 교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교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8., 2021. 12. 01.>

③ <삭제 2021. 02. 08.>

④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 09. 01.>

⑥ <삭제 2021. 02. 08.>

⑦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임용기간 내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의 연구실적심사기준에 의한 1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최소로 하고 평정기간과 평가자료는 재임용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급별로 최근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자료로 한다. 다만,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조제2항제1호에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년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1. 02. 08., 2021. 12. 01.>

1. 조교수 재임용 : 재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 <신설 2021. 02. 08.>

2. 부교수 재임용 : 재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7년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



료 <신설 2021. 02. 08.>

⑧ 교무처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재임용심사를 요청할 때는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심사평정표<서식 제1호>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이사장에게 재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2. 08.> <개정 2021.12.01., 2023.10.16.>

⑨ 교원인사위원회가 제8항에 의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교원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 02. 08.> <개정 2021.12.01.>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⑩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중 대학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1차에 한해 연구, 교육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고 대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임용 탈락 교원을 총장이 제청하여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제26조(재임용의 시기) 재임용은 매학년도 학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월과 9월에 행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의 2(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 예외) 신규임용교원의 첫 번째 재임용은 임용 당시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행상태를 심사하여 재임용을 제청한다.

[본조신설 2022.02.16.]

제26조의 3(모집정지 학과의 재임용 심사기준 예외) <삭제 2024.03.01.>

## 제6장 보 직

제27조(교원의 보직) ① 직제에 따라 교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자격, 전공분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의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 임기 내에 정년 해당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제28조(보직절차) 보직은 본 대학교 직제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이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29조(학부(과)장) 학부(과)장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으로 보하되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3.10.16., 2025.03.01.>

제29조의2(센터장, 사업단장)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9.07.10., 2020.03.01., 2021.12. 01., 2023.10.16.>

제29조의3(총장)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 02. 08.] <개정 2021.12.01.>

제30조(임기)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전보 및 해임) 이사장은 모든 교원의 보직을 임기 전이라도 총장의 제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보 및 보직해임을 행할 수 있다.

## 제7장 휴직·복직 및 퇴직

제32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21.12.0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개정 2021.12.01.>
7.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25.03.0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25.03.0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2021.12.0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33조(휴직의 기간) 전조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12.01.>

1. 제32조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21.12.01.>
2. 제32조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 :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01.>
3. 제32조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 : 3월로 한다. <개정 2021.12.01.>
4. 제32조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01.>
5. 제32조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 :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6. 제32조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하며, 재직 중 2회에 한한다. <개정 2021.12.01.>
7. 제32조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 :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01.>
8. 제32조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 : 3월로 한다. <개정 2021.12.01.>
9. 제32조제10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01.>

제34조(제출서류) ① 교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휴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휴직원과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01.>

1. 의병휴직은 휴직원과 의사의 진단서
  2. 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휴직원과 법정의무의 발생 또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3. 해외관계(해외유학, 국가기관 고용, 해외연수 등)로 인한 휴직은 휴직원과 목적·기관·체류국·유학·연수 또는 고용기관명·초청자·우리나라의 시행주관 또는 주선기관명·경비관계(항공료, 체제비, 연구보조비 등)·초청장 또는 고용계약서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서
  5.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의사 소견서
- ② 교원이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③ 교원이 1개월 이상 무단결근 또는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임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01.>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1.12.01.>

제36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2.08., 2021.12.01.>

② 제32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01.>

제37조(휴직기간의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면직된다. <개정 2021.12.01.>

제38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전조에 의하여 자동 면직된 교원은 휴직 중 지급된 급여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휴직기간의 계산) ① 휴직 중인 교원이 그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초과되는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1.>

② 공무가 아닌 해외 파견 또는 해외출장 중의 휴직기간은 2분의 1로 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1.12.01.>

제40조(복직) 제32조에 의한 휴직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직원과 직무가능서, 휴직사유 소멸서 등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01.>

제41조(퇴직) ①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과 본인 자필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42조(휴직, 복직, 퇴직의 절차) 휴직, 복직 및 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01.>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 제8장 연구실적물

제44조(연구실적심사기준) ①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에 관한 연구실적물의 심사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실적물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교교원인사관리 지침」 및 본 대학교 세부규정에 의한다.

## 제9장 교원업적평가

제45조(교원업적평가) ① 총장은 매년 교원의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호봉승급, 연봉재확정, 성과급 지급, 재계약·재임용심사 또는 승진심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8.>

② 교원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은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2.08.>

## 제10장 보 칙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1.02.09.>

제47조(상·벌) 교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교직원 표창규정 및 교원징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1.02.08., 2025.03.01.>

제48조(평정기준) 이 규정 제18조, 제21조, 제25조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의 평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2.08.>

제4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 및 정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01.>

제50조(호봉승급과 연봉재확정) ① 정기호봉승급과 연봉재확정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신설 2021.02.08.> <개정 2021.12.01.>

② <삭제 2024.03.01.>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변경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 전환하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이 변경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교수의 승진을 위한 복무연한은 제21조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4년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준) 승진, 재임용 대상자가 2020년까지 적용기간의 해당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미달시 조교수는 6년, 부교수는 7년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호봉승급, 연봉재확정은 2022년까지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16.>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8.22.>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3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 표 1 ]

교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교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별 표 2 ] <개정 2025.03.01.>

연구실적심사기준

구분	연구실적심사기준	비고
I. 연구실적물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li> <li>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 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li> <li>• 학회지</li> <li>• 논문집</li> <li>• 학술지로 공인받은 정기간행물</li> <li>• 특허</li> <li>• 연구보고서</li> <li>• 학술회의 발표논문</li> <li>•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전시·입선 등을 포함한다.</li> </ul> </li> <li>3.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li> </ol>	
II. 연구실적물의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서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 저서만 연구실적 물로 인정한다.</li> <li>2.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li>3. 전문대학교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li> <li>4. 예·체능계 전공은 학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li> <li>5.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신규임용의 경우는 임용전에 취득한 학위논문, 기간제 및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현직명서 취득한 학위논문에 한한다.</li> <li>6. 학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연구보고서는 논문으로 인정한다.</li> </ol>	

구 분	연구 실적 심사 기준	비 고
Ⅱ. 연구실적물의 인정	<p>7. 아래 연구논문은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승진 임용, 재임용(신규임용시는 제외)시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교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li> <li>•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li> <li>• 산학협동(산업체 현장문제, 학생 현장실습 등)에 관한 연구</li> <li>• 학생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li> <li>• 산업체에서 2개월이상 현장연수후 작성한 연수 결과보고서 100%인정</li> <li>• 교원연수기관 또는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서 10주 이상의 연수를 마치고 작성한 연수결과 보고서 100%인정</li> </ul>	
Ⅲ. 연구실적물의 심사	<p>1.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인정</li> <li>•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인정</li> <li>•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인정</li> <li>• 4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인정</li> <li>•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인정</li> <li>•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 인정</li> </ul> <p>※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경우에는 학위 취득자 단독논문으로 간주한다.</p> <p>2. 예·체능계 실기(연기, 연주, 발표, 전시, 창작, 출품, 입상 등)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교수자격인정심 사준칙 제5조 제3항 별표 2에 의하되 평점 1점은 연구 실적 100%로 인정한다.</p> <p>3. 연구실적의 연간 인정범위 연구실적은 연간 발표회수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한다.</p> <p>4.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평가 최소요구 기준은 200%로 한다.</p> <p>5.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평가 최소요구기준은 100%로 한다.</p>	

3-2-2 교원인사규정

구 분	연구실적심사기준	비 고
Ⅲ. 연구실적물의 심사	6.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소속대학교 전공분야 교원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타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8. 연구실적의 인정은 각 편 공히 “우(B)” 이상이어야 한다. 9. 연구년 참여 교원에게는 승진임용시 연구실적 100% 인정	

Ⅳ. 연구실적물 예외 인정

다음과 같은 경력지를 신규채용할 경우 연구실적물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경 력 사 항	임용직급	연구실적물 인정
○ 공과계대학교 (공업교육대학교,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임용일 기준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	조 교수	○ 조교수는 최근 3년이내의 논문 1편(100%) 이상 ○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사가 있는 자로서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동 과정의 1년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이며 한국과학기술원장이 추천하는 자		○ 한국과학기술원장의 평점 및 추천을 연구실적 1편(100%)으로 인정
○ 대학교(전문대학교)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 하는 경우		○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 가능

[ 별 표 3 ] &lt;신설 2025. 03. 01.&gt;

## 경 력 인 정 환 산 율

## 가. 연구실적 환산률 산출 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	비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주당 5시간 이하)	50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전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전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다. 조교 및 체육코치 등		
①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석·박사 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 × 0.7	(단, 재학년수는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 × 0.7	(단, 재학년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2-2 교원인사규정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	비고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 본교가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본교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3. 산업체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②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 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본교가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70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② 변호사 개업기간	100	
③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70	
④ 한국 해양대학, 부산 수산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등 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라. 의사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70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 의사 근무	70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	비고
마.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한 경력	50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하한 경력	5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하한 경력	7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70	

나. 본교가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범위

번 호	경 력 내 용	인정기관 및 시설범위	환산율 (%)
가. 연구실적 환산율환산 기준표 3. 나의 ①관련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하한 경력 ◦대기업체등 ◦중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한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하한 중소기업을 제외하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하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li> <li>대학전공분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하한 중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하한 기업체</li> </ul>	70
가. 연구실적 환산율환산 기준표 3. 라의 ④관련	국가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간호사의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한 병원</li> </ul>	70
가. 연구실적 환산율환산 기준표 3. 나의 ①관련	공대졸업자로서 본교가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하한 중소기업을 제외하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한 업체</li> <li>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하한 중기업체로서 공업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하한 기업체</li> </ul>	70

3-2-2 교원인사규정

다. 자격심사 평정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	비고
1. 미술		
가.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 입선 1회	1점	
• 특선이상 1회	2점	
• 국제전출품 1회	0.5점	
나. 지역규모공모전		
• 특선이상 2회	1점	
• 입선 4회	1점	
다. 공인된 개인전		
• 개인전 1회	1점	
• 2인전 1회	0.5점	
• 기획전 1회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 입선 1회	0.3점	
• 특선이상 1회	1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 출품 1회	1점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1점	
사. 미술대전등 심사위원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1점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0.5점	
• 시·도 단위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1회	0.5점	
2. 체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발표회 : 1회	1점	
나. 올림픽 경기출전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 2회	1점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 1회	1점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3.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4.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점	



[서식 제1호]

<h2 style="margin: 0;">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심사평정표</h2>								
대원대학교								
피평정자	<input type="checkbox"/> 학과 : <input type="checkbox"/> 직위 : <input type="checkbox"/> 직책 : <input type="checkbox"/> 성명 :				○채 용 일 자 : ○현직위 임 용 일 : ○현직위 재임용일 :			
승진 필수 조건 충족여부	연구실적 최소기준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산업체연수 최소기준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평정영역	교원업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평균점수
1. 관리자평가								
2. 공통평가								
3. 교육활동								
4. 산학협력								
5. 연구활동								
6. 봉사 및 기타								
7. 가감산점								
평 정 계								
대학교 발전에 대한 공헌도					종 합 판 정			
위 사람의 재임용(승진)심사평정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정함.								
작성자 교무팀장				(인) 확인자 교무처장				(인)